2025 학년도 2 학기 문헌연구보고서



여경 무용론의 한계와 여성 경찰의 기능적 필요성 연구

이름	임*별
전공	기업경영학부
학번	2025****

목차

1. 서론

2. 여경 무용론의 한계
2.1. 경찰 역량에 대한 협소한 이해
2.2. 논란의 젠더 편향적 성격과 사회적 영향

3. 디지털 성범죄와 2 차 피해 문제
3.1. AI 기반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과 피해 양상
3.2.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2 차 피해의 실태

4. 정책적 개선 방향
4.1. 여성 전문 조사관 확대의 필요성
4.2. 성인지 감수성 교육 체계 개선

5. 결론

1. 서론

경찰은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힘쓰는 핵심 공공기관이며, 그중 여성 경찰의 역할을 둘러싼 논쟁은 최근 몇 년 사이 SNS 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여경 무용론은 체력과 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문제로 삼고 있지만 이는 곧 경찰의 존재를 물리적 치안 유지라는 기준만으로 본다고도 할 수 있다. 최근 사례로는 2025 년 2 월 광주에서 일어났던 여경 사건으로 신고 현장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여성 경찰을 비판하는 여경 무용론을 예로 들을 수 있다.[1] 하지만 이러한 논란은 현재 경찰의 업무가 치안 중심에서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2 차 피해와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여성 경찰의 역할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디지털 환경이 급변하면서 딥페이크와 같은 신종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경찰에게 요구되는 전문성 역시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AI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나타난 신종 범죄이다. 합성 영상 제작, 비동의 촬영물 유포와 같이 기술 기반 범죄로 짧은 시간 안에 확산되고 삭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피해를 남기는 특징을 지닌다. 2025 년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딥페이크가 큰 논란이

[1] KNN NEWS(2025.2.27.), <경찰 내부에서 터져나온 불만 "현장 대응력 부족한 여경 많아">,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uWLqZhVF6Tw (2025.12.6.).

됐던 만큼 10~20 대 여성 피해자가 대부분이다.[2]

이와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는 수사 과정에서 겪게 되는 2 차 피해가 빈번하다는 문제가 되고 있다. 2 차 피해의 예시로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설명하는 과정에서 증거 화면을 함께 확인해야 할 때 느끼는 수치심과 담당 조사관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 비전문적 태도가 있다. 필자 또한 가까운 가족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실을 남성 수사관에게 진술하는 과정에서 큰 심리적 불편을 겪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다. 이 경험을 통해 여성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측면에서 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실감한 바 있다. 이러한 경험은 실제 수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느끼게 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의 2 차 피해와 여성 경찰의 역할을 살피는 본 주제는 현재의 수사 구조와 피해자 보호 문제를 분석하기에 매우 적합한 연구대상이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과 수사 과정에서의 2 차 피해를 중심으로 여경 무용론의 한계를 분석하고, 여성 경찰의 기능적 필요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여경 무용론이 갖는 논리적 한계를 드러내고, 디지털 성범죄와 2 차 피해 문제를 통해 여성 경찰의 필요성을 재평가함으로써 향후 수사 체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 장에서는 여경 무용론의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고, 3 장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한 피해를 분석하며, 4 장에서는 여성 경찰의 기능적 필수성과 개선 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여경 무용론의 한계

2.1. 경찰 역량에 대한 협소한 이해

여경에 대한 비판이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이유는 대부분 체력이나 현장 대응 시 발생하는 미숙한 대처를 근거로 제시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경찰이 수행하는 업무의 전체적인 범위를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한 평가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실제로 경찰의 업무는 물리력 행사 외에도 ①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②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 수집·작성 및 배포 ③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④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등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한다.[3] 따라서 이러한 비판은 다양해지고 있는 업무 환경을 고려해 본다면 경찰의 역할을 단순히 물리적 능력으로만 평가하는 협소한 시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경찰이 위급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를 본인이 결정함에 있어 차후 과잉대응이라는 논란이 일어나는 문제를 통해 단순히 성별 문제보다는 외부 시선과 소극적인 경찰 조직 문화가 미흡한 현장 대처에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4] 즉 현장에서 경찰관이 즉각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판단에 따라 이후 어떠한 비판이 돌아올지에

[2]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5.8.28.),「지난 1 년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1,807 명 지원…AI 기반 대응체계 본격 추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https://www.stop.or.kr/home/kor/M827891955/board.do?act=detail&deleteAt=N&idx=cb00d1a0008a85e71a41b8741facbffee017addf3ef5b6e0ce4e5a58972d8161 (2025.12.6.).

[3]「경찰관 직무직행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51115&lsiSeq=273315#0000 (2025.12.6.).

[4] 신준명 (2021.11.24.),「'여경 무용론' 재점화…"젠더 아닌 경찰의 능력 문제"」,《YTN》, https://www.ytn.co.kr/_ln/0103_202111242213447142 (2025.12.6.).

대해 고려해야 하는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누구든 주저할 수밖에 없으며 성별만이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은 실제 사건에서도 확인된다. 대표적으로는 2022 년 이태원 참사 당시 여러 시민이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를 반복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현장에 배치된 인력은 여경이 아니었음에도 즉각적인 통제 조치를 시행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지휘 체계의 판단 지연으로 인해 인력 배치 또한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TV 보도에서도 참사의 주요 원인이 특정 경찰관 개인의 역량이 아닌 위험 신고를 제때 반영하지 못한 지휘 체계 부재와 조직적 대응 실패였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5]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도 주요 원인은 지휘 체계의 혼란, 의사결정 지연, 인력 운영 실패 등 조직적인 구조의 문제였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6] 이 사건은 경찰의 대응 문제를 성별로 단순화하는 시각이 얼마나 본질에서 벗어난 해석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실제 대응 실패는 성별과 무관하게 경찰 조직 내부의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된다.

2.2. 논란의 젠더 편향적 성격과 사회적 영향

여경 무용론은 젠더 편향적 시각을 강하게 담고 있다. 과거 인천경찰 대응 사태에서도 여성 경찰관이 현장을 나온 후 뒤따라 20 년 차 경력의 남성 경찰관도 상황을 대처하지 못한 채 현장에서 벗어난 사례가 있다.[7] 하지만 같은 현장 대응 실패라도 남성 경찰관에게는 남경 무용론이라는 논란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경찰 역량에 대한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것뿐만 아니라, 논란의 초점이 현장 대응보다는 특정 성별을 비난하는 데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시각은 경찰 조직 내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필요했던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향 역시 흐려지게 된다. 특히 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숙한 대응의 원인은 교육과 훈련의 부족이나 조직 차원의 대응 시스템 문제일 수 있음에도 일부 장면만 떼어내어 성별 문제로 확대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이는 여성 경찰 개인의 역량과 상관없이 '여성 경찰 전체'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묶여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분위기는 조직 내에서 여성 경찰이 자신감을 갖고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도 부담을 줄 뿐만이 아니라 고정된 역할만 맡게 되는 구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 이런 논쟁이 계속될수록 정작 필요로 하는 조직 역량 강화에 대한 논의는 뒤로 밀리게 되고 성별 갈등만 커지는 불필요한 상황이 반복된다. 따라서 여경 무용론을 둘러싼 젠더 편향적 시각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3. 디지털 성범죄와 2 차 피해

[5] 연합뉴스 TV(2022.11.4.), <[뉴스특보] '이태원 참사' 경찰 부실대응·늑장보고 논란>, 연합뉴스 TV,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21104010300038 (2025.12.7.).

[6] 송상현(2022.11.11.),「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열흘, 칼끝 '4 대 쟁점' 정조준」,《뉴스 1》, https://www.news1.kr/society/incident-accident/4860789 (2025.12.6.).

[7] 이혜진(2021.11.23.),「20 년차 남경도 흉기난동 현장 이탈…여경은 올해 현장 배치된 '시보'」,《매일신문》, https://www.imaeil.com/page/view/2021112317460485828 (2025.12.6.).

3.1. AI 기반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과 피해 양상

2023 년 이후부터 인공지능 기반 AI 가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다. 딥페이크란 몇 장의 이미지로도 실제 영상을 촬영한 것처럼 보이는 합성물을 만들어내는 기술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적 영상이 생성되어 유포되는 범죄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딥페이크 피해는 전년 대비 2 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으며, 온라인 범죄라는 특성상 유포가 빠르고 삭제가 어렵다.[8] 이러한 특성 때문에 피해자는 '혹시 지인이 보게 된다면 어떡하지?'와 같은 지속적인 불안과 심리적 압박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기술적 특성과 더불어 사회적 인식 역시 심각성을 반영한다. 디지털 범죄 대응 전문 기업이 시행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0.2%가 딥페이크 범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위협이 심각하다고 평가했다.[9] 이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안전과 신뢰의 문제로까지 인식이 넓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2024 년 통계청 및 여성가족부의 자료에 따르면, 성적 폭력 피해자가 대부분 10~30 대 여성이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디지털 기기와 SNS 사용률이 높은 청년층이 기술 기반 범죄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을 동시에 젠더 기반의 디지털 폭력이 구조적인 문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사회에서 불법 디지털 범죄 관련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성 문제로 인해 1 차 대응과 같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담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대부분 여성 상담자를 더 선호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홍경란 [10]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은 이성 및 성 문제를 상담할 때 전반적으로 여성 상담자를 선호하며 이때 내담자의 심리적 안정감과 개방성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흥미로운 점은, 남성 내담자 역시 성 관련 상담에서는 여성 상담자를 더 선호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성적 경험처럼 민감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 남성 또한 여성 상담자가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고 부담이 적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딥페이크 및 불법 촬영물 피해자들은 진술 과정에서 극심한 수치심과 트라우마를 경험하는데 이때 남녀 모두 여성 조사관에게 더 높은 개방성과 심리적 안정감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곧 진술의 정확성과 피해자 보호 수준을 높여 수사의 신뢰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의 모니터링 및 1차 대응 단계에서 여성 경찰을 배치하는 것은 단순한 인력 구성이 아니라 남녀 피해자 모두의 심리적 안정과 정확한 진술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기능적 필수 요소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여성 경찰의 역할과 필요성은 더욱 명확하게 부각된다.

3.2.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의 실태

[8] 이상서(2025.4.10.),「디지털성범죄피해자 1 만명 넘어…딥페이크 피해는 2 배 이상 급증」,《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410065300530 (2025.12.6.).

[9] 송혜리(2025.11.12.),「'딥페이크, 선거까지 영향'…국민 90% "사회적 위험 심각" 인식」,《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112_0003400230 (2025.12.6.).

[10] 홍경란(1993),「대학생이 선호하는 상담자 유형에 관한 연구 : 상담자의 성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 쪽.

성범죄의 피해는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범죄 피해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가로 겪는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의미한다.[11]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에 의한 2차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88%가 수사, 상담 등의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경험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12] 이러한 수치는 단순히 개인적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 조사의 연속성이 부족하거나 피해자를 취조하듯 대하는 수사 방식 등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13] 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진술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자신의 피해 영상을 설명해야 하고 때로는 조사관과 함께 영상을 보며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는 피해자에게 큰 수치심과 심리적인 충격을 유발하게 된다.

또한 일부 수사기관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왜 필사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냐"[14], "강제로 키스했을 때 왜 혀를 깨물지 않았냐"[15]와 같은 부적절한 질문을 한 사례가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인터뷰에서도 "그러게 왜 촬영했느냐(또는 동의했느냐)"[16], "왜 범행이 발생한 새벽 바로 신고하지 않았느냐"[17]와 같이 피해자의 책임을 암시하는 질문을 받은 사례도 반복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는 수사 과정 시 성인지 감수성 부족과 비전문적 접근이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증가시키고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까지 초래하는 것이다. 2025년 10월에는 전북도의회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며 "불법 촬영이나 성 착취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대부분이 2차 피해를 경험한다"[18]라고 밝힐 정도로, 이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언론에서는 불법 촬영 피해 관련하여 "특히 주로 남성들이 이런 문화를 소비하다 보니 해당 범죄를 바라보는 성별 차가 무척 크다"[19]고 지적한다. 즉, 디지털 성범죄물을 중심으로 한 성적 소비 문화가 남성 중심적으로 형성되어 있어 성범죄의 심각성을 축소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왜곡된 인식을 재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성평등

[11]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13219&ancYnChk=0#0000 (2025.12.6.).

[12] 조해람(2023.12.7.), 「"너 아냐?" 디지털성범죄 상처 헤집는 2 차피해…가장 힘 된 말은」,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312071354001 (2025.12.6.).

[13] 조준택 외 2 명(2024),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개선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51 쪽.

[14] 이예슬(2025.1.30.), 「"왜 혀 안 깨물었냐"…피해자 2 차 가해한 수사기관·재판부들 '걸림돌' 선정」,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301329001 (2025.12.6.).

[15] 이예슬(2025.1.30.), 위의 기사.

[16] 김소영(2025.3.9.), 「"'촬영은 동의했잖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2 차 가해 심각" [N 번방 너머의 이야기]」,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50309/131162182/1 (2025.12.6.).

[17] 고나린·김효실(2024.12.4.), 「"2 차 가해 참지 않아"…곽혈수 고백에 '2025 미투' 확산」,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232897.html (2025.12.6.).

[18] 임채두(2025.10.16.), 「서난이 전북도의원, 디지털 성범죄 '2 차 피해' 예방 나선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1016123000055?input=1195m (2025.12.6.).

[19] 박세희(2018.8.1.), 「불법촬영 성폭력 피해자는 왜 경찰이 내편이 아니라고 느꼈나?」, 《HUFFPOST》, https://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72856 (2025.12.12.).

감수성에서 성별 격차가 구조적으로 존재함을 보여준다. 연구 결과 역시 이러한 경향을 뒷받침한다. 남성 경찰관들은 성폭력에 대해 설문 결과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았다면 성폭력이 아니다', '여성의 심한 노출 때문에 성폭력이 발생한다'와 같은 질문에 동의하는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20] 이는 남성 수사관의 경우 비교적 성폭력을 상대방이 원했는가에 초점을 두지 않고 피해자의 외적 행동이나 저항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을 보여주며 성인지 감수성이 구조적으로 부족함을 시사한다.

경찰청에서는 단순 상담신고라도 반드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통보하며 여청수사팀에 인계해 검토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21]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여성의 성인지 감수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거나 2 차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적은 것으로 확인되며 여성 수사인력의 참여는 피해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진술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여경은 단순한 인력 구성의 차원을 넘어 성인지 감수성을 회복하고 피해자 중심의 수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4. 정책적 개선 방향

4.1. 여성 전문 조사관 확대의 필요성

4 장에서는 앞서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현재 수사 방식의 한계를 살펴보면서, 전문 인력 배치의 필요성과 개선 방안을 분석하고자 한다. 여성 경찰의 필수성은 2 차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측면에서 그 필요성을 보여준다. 경찰청 훈령에서 성폭력 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은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 피해자를 동성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이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22]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이미 법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2 차 피해를 위해 여성 경찰관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일 경우와 판단자의 성별이 여성인 경우에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은 높아진다는 것으로 나타났다.[23] 이는 수사를 여성 경찰관이 전담할 때 피해자는 심리적 안정을 느껴 더욱 솔직한 진술을 하여 수사 결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적 필수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전담팀 내에 여성 경찰 전문 인력 확대 및 의무 배치가 필요하다. 앞으로는 성폭력 전담조사관 자격을 가진 여성 경찰관의 비율을 의무적으로 확대하고, 2 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강화하여 신종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인력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20] 이명신·양난미(2012),「성폭력 수사에 있어 이차피해 과정: 남성 경찰관을 중심으로」,『여성연구』제 24 권 제 3 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74~175 쪽.

[21] 김헌주(2018.3.30.),「[단독] 미투 피해자에 "왜 도망 안갔나?" 못 묻는다」,《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8/03/31/20180331008027 (2025.12.12.).

[22]「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Id=45051&efYd=0 (2025.12.6.).

[23] 강은영 외 2 명(2020),「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형사사법기관 판단 및 개선방안 : 성인지감수성을 중심으로」,『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78 쪽.

4.2. 성인지 감수성 교육 체계 개선

이러한 여성 경찰의 역할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피해자의 2 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수사관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성인지 감수성 관련 교육은 경찰청에 의하면 "예방교육은 연 1 회 1 시간 이상의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청각 또는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24]라고 명시되어 있다. 교육은 일반적으로 강사 초청의 참여형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25] 하지만 이러한 사례 분석 중심의 교육보다는 역할극과 VR 가상현실과 같은 체험형 교육 방법으로 피해자의 감정 이입에 중점을 두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의 연 1 회라는 횟수를 분기 1 회 연 4 회로 확대하여 지속적인 감수성 유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수사관들은 무의식적인 편견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빠르게 변화해가는 환경에 맞춰 최신 사례와 대응 방식을 꾸준하게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성인지 감수성 강화는 2 차 피해를 줄여 피해자를 보호하며 수사의 효율성도 높이는 훌륭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데 끝나지 않고 실제 수사 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의 태도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조사관이 피해자의 진술 방식을 세심하게 배려하거나 반복적인 진술을 최소화하는 절차적 과정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가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또한 교육 과정에 현직 수사관들의 실제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포함시킨다면 추상적인 개념보다 실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 교육 효과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성인지 감수성 교육은 단순한 업무 교육이 아니라 경찰 조직이 신뢰를 회복하고 디지털 성범죄라는 새로운 범죄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 역량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5. 결론

본고는 여경 무용론과 디지털 성범죄 과정에서 발생하는 2 차 피해 문제를 중심으로, 여성 경찰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현재 수사 과정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함께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여성 경찰에 대한 비판은 경찰 업무의 폭넓은 성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과 몇몇 사례만으로 성별 전체의 역량을 평가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경찰의 역할이 단순히 물리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피해자 조사와 심리적 안정을 지원해주는 전문적인 영역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경무용론이 가진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또한, 피해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2 차 피해는 AI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중요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이성 조사관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불편함과 수치심을 겪고 있다고 분석하며 이러한 상황이 수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현실적으로 본다면 여성 조사관의 배치가 단순히 조직의 인력을 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24] 「경찰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 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42926 (2025.12.6.).

[25] 장재기(2025.6.9.), 「청도경찰, 관리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경북일보》,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3829 (2025.12.6.).

피해자를 보호하고 수사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글에서는 여성 경찰의 기능적인 필수성에 대해 강조하며 디지털 성범죄 수사팀 내에서의 여성 전문 인력을 확대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전체적인 경찰 조직에 강화하고 연 1 회에 불가했던 교육 정책을 보다 정기적이고 체험 중심의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변화는 피해자 중심적인 수사 환경을 만들고 2 차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전반적인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여성 경찰을 둘러싼 논쟁에 대하여 단순하게 "필요하다, 필요없다"는 식의 판단에서 끝낼 문제가 아니며, 앞으로는 이들의 역량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 피해자의 상당수가 여성인 성범죄 수사에서는 여성 조사관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더 큰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를 반영해 교육과 인력 배치를 조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수사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고에서 제안한 디지털 성범죄 전담 조직 운영,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를 넘어 실질적인 정책 대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가 꾸준히 이어지게 된다면, 피해자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수사 환경과 경찰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에도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은영 외 2 명(2020),「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형사사법기관 판단 및 개선방안 : 성인지감수성을 중심으로」,『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352 쪽.

「경찰관 직무직행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51115&lsiSeq=273315#0000 (2025.12.6.).

「경찰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 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42926 (2025.12.6.).

고나린·김효실(2024.12.4.),「"2 차 가해 참지 않아"...곽혈수 고백에 '2025 미투' 확산」,《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232897.html (2025.12.6.).

김소영(2025.3.9.),「"'촬영은 동의했잖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2 차 가해 심각" [N 번방 너머의 이야기]」,《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50309/131162182/1 (2025.12.6.).

김헌주(2018.3.30.), 「[단독] 미투 피해자에 "왜 도망 안갔나?" 못 묻는다」,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8/03/31/20180331008027 (2025.12.12.).

박세희(2018.8.1.),「불법촬영 성폭력 피해자는 왜 경찰이 내편이 아니라고 느꼈나?」,《HUFFPOST》, https://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72856 (2025.12.12.).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Id=45051&efYd=0 (2025.12.6.).

송상현(2022.11.11.), 「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열흘, 칼끝 '4 대 쟁점' 정조준」, 《뉴스 1》, https://www.news1.kr/society/incident-accident/4860789 (2025.12.6.).

송혜리(2025.11.12.), 「'딥페이크, 선거까지 영향'…국민 90% "사회적 위험 심각" 인식」,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112_0003400230 (2025.12.6.).
신준명 (2021.11.24.), 「'여경 무용론' 재점화…"젠더 아닌 경찰의 능력 문제"」, 《YTN》, https://www.ytn.co.kr/_ln/0103_202111242213447142 (2025.12.6.).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13219&ancYnChk=0#0000 (2025.12.6.).
연합뉴스 TV(2022.11.4.), <[뉴스특보] '이태원 참사' 경찰 부실대응·늑장보고 논란>, 연합뉴스 TV,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21104010300038 (2025.12.7.).
이명신·양난미(2012),「성폭력 수사에 있어 이차피해 과정: 남성 경찰관을 중심으로」,『여성연구』 제 24 권 제 3 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49~197 쪽.
이상서(2025.4.10.), 「디지털성범죄피해자 1 만명 넘어…딥페이크 피해는 2 배 이상 급증」,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410065300530 (2025.12.6.).
이예슬(2025.1.30.), 「"왜 혀 안 깨물었냐"…피해자 2 차 가해한 수사기관·재판부들 '걸림돌' 선정」,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301329001 (2025.12.6.).
이혜진(2021.11.23.), 「20 년차 남경도 흉기난동 현장 이탈…여경은 올해 현장 배치된 '시보'」, 《매일신문》, https://www.imaeil.com/page/view/2021112317460485828 (2025.12.6.).
임채두(2025.10.16.), 「서난이 전북도의원, 디지털 성범죄 '2 차 피해' 예방 나선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1016123000055?input=1195m (2025.12.6.).
장재기(2025.6.9.), 「청도경찰, 관리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경북일보》,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3829 (2025.12.6.).
조준택 외 2 명(2024),「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개선 연구」,『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170 쪽.
조해람(2023.12.7.), 「"너 아냐?" 디지털성범죄 상처 헤집는 2 차피해…가장 힘 된 말은」,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312071354001 (2025.12.6.).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5.8.28.), 「지난 1 년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1,807 명 지원…AI 기반 대응체계 본격 추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https://www.stop.or.kr/home/kor/M827891955/board.do?act=detail&deleteAt=N&idx=cb00d1a0008a85e71a41b8741facbffee017addf3ef5b6e0ce4e5a58972d8161 (2025.12.6.).
홍경란(1993),「대학생이 선호하는 상담자 유형에 관한 연구 : 상담자의 성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KNN NEWS(2025.2.27.), <경찰 내부에서 터져나온 불만 "현장 대응력 부족한 여경 많아">,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uWLqZhVF6Tw (2025.12.6.).